

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839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2011. 8.
제 출 자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,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이내로 확대하는 등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와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구분(안 별표)
- 나. 자전거 정책 자문기능 강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이내로 확대(안 제19조)
- 다. 자전거정비소 ⇒ 자전거수리센터, 구민자전거 ⇒ 공공자전거로 명칭변경
- 라. 자전거 등록제, 자전거보험, 민간단체 및 자전거이용자의 지원 규정 신설

3. 근거법규

- 가. 「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
- 나. 「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제2항
- 다. 「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2항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 조치사항 : 해당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- 다. 관련부처 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사항 : 2011. 8. 1 ~ 8. 21(의견없음)

중구 조례 제 호

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“를 ”「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자전거정비소”를 “자전거수리센터”로, 같은 조 제4호의 “구민자전거”를 “공공자전거”로 한다.

제3조 중 제목 “구청장의 책무 등”을 “구청장 등의 책무”로 하고, 본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“삭제”하며, 제1항과 제2항을 “신설”한다.

① 울산광역시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자전거이용의 여건개선과 안전성 확보 사항
2.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 사항
3.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 사항
4. 그 밖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기반구축에 관한 모든 사항

②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의 자전거이용 시설(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)의 설치·운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”를 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 할 권리”로 하고, 제3호 중 “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”를 “건강·체력 향상과 환경을 위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 할 책무”로 한다.

제6조 중 본문을 “삭제”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 “신설”한다.

-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.
-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 명칭 사용 승인과 주민 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 중 제1항 “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”를 “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(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)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 한다”로, 제2항 “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”를 “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. 다만, 별표의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”로 하며, 제3항과 제4항을 “삭제”한다.

제10조 중 본문 단서를 다음과 같이 “신설”한다.

“다만, 자전거주차장의 관리·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.”

제11조 중 제목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“정비소”를 “수리센터”로 하고, 제3항의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, 제4항의 “따로”를 “규칙으로”로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“신설”한다.

제11조의2(자전거보관대의 설치 권장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
1. 공동주택이나 균린생활시설 소유자나 관리자
2. 관공서를 비롯한 교육·금융·의료·종교기관 및 유관단체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
3. 대중이 이용하는 숙박·목욕·대형유통시설 등 소유자나 관리자
4. 주택 재개발·재건축 및 건물의 신축·개축·증축 사업시행자나 소유자 등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권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 중 제목 및 제1항 중 “구민자전거”를 “공공자전거”로 하고, 제2항의 “제1항에 따른 구민자전거 관리·운영을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”를 “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 관리·운영을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.”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“신설”한다.

제12조의2(공공자전거의 변상책임)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던 중 이용자의 고의·과실이나 부주의로 자전거를 파손·훼손하거나 도난·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용자의 고의·과실이나 부주의가

아닌 자연현상에 따른 파손·훼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3조제3항 중 “시범기관”을 “시범지역 및 시범기관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본문을 “삭제”하고,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“신설”한다.

-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‘자전거의 날’로 한다.
 - ② 구청장은 ‘자전거의 날’이 속하는 달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15조제2항 중 “자전거정비소”를 “자전거수리센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다음과 같이 “신설”한다.
- ③ 구청장은 자전거타기의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.
 - ④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 - ⑤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의 관리·운영을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관리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·지원 할 수 있다.

제18조 중 제1호 “구민자전거의 효율적인 운용 사항”을 “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사항”으로, 제2호 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사항”을 “자전거이용 여건개선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”으로, 제3호 “자전거이용 활성화 평가 사항”을 “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”으로, 제4호 “그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”를 “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 등 심의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15명”을 “20명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3항 중 “간사 1명”을 “간사 와 서기 각 1명”으로 하고, “간사는 자전거업무 담당주사”를 “간사는 자전거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되고, 서기는 자전거관련업무 담당자”로 한다.

제22조의2을 다음과 같이 “신설”한다.

제22조의2(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23조 중 “「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」”를 “「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”로,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“제24조”를 “제29조”로 하고,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다음과 같이 “신설”한다.

제24조(자전거도로 이용제한 등) ①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및 이용시설 여건 등에 따라 안전보호장구를 구비·착용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자전거도로상의 불법행위 단속 전담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.

제25조(자전거의 등록)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는 구민에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.

②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·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 우선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자전거의 등록 및 관리·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26조(자전거 보험) ① 구청장은 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구민으로서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를 이용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,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③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.

제27조(민간단체 및 자전거이용자의 지원)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앞장선 구청 산하 공무원 및 이용 구민에게 행정·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28조(권한의 위임·위탁 등)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게 위임·위탁하거나 지원한 경우 수임자 등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계 서류 등을 조사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별지>

[별표]

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(제7조제2항 관련)

1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
 - 가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
 - 나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
 - 다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(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중 기숙사·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)
2.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: 「주택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
3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
 - 가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시설물 중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물
 - 나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시설물(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)
 - 다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의 시설물
 - 라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
 - 마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시설물(위락시설 중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물,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,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·다세대주택과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)

<비고>

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의안심사보고서 (의안번호 839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1. 8. 25(목)
- 나. 제출자 :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 : 2011. 8. 30(화)
- 라. 위원회 심사 : 2011. 9. 6(화)

3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과 「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여 정비하고,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 변경(안 제7조)
 -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와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구분(안 별표)
- 자전거 활성화 위원회 위원 증원(15명 ⇒ 20명)
 - 자전거 정책 자문기능 강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이내로 확대(안 제19조)
- 자전거 보험 가입규정 신설 등(안 26조)

4. 근거법령

- 「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
- 「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제2항
- 「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2항
- 「주택법 시행령」 별표

5. 검토의견 (전문위원 김영호)

- 본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, 자전거 이용자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고,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,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의결 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- 수정사유
 - 수당지급 절감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수 축소

상 정 안	수 정 안
<p>제19조(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<u>2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19조(위원회의 구성)</p> <p>① ----- ----- <u>15명</u> 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